

#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2-76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1.

제 출 자 : 김제시장

## 1. 개정이유

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미정비된 동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골자

-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)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제1항제1호)
-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맞도록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종전 “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”를 “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”로 개정함(안 제3조제1항제1호)
-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의하여 동조례의 미정비된 공직자윤리법 인용조항을 공직자윤리법에 맞도록 개정함(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안 제6조제2항제1호)

## 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공직자윤리법 제8조·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기 타 : ▶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
▶규제심사 : 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이견없음  
(규제신설·폐지 등 없음)  
▶입법예고(2002. 8. 1~8. 21)결과 특기사항 없음

김제시조례 제 호

##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중 “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”를 “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하는 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항제2호중 “법 제8조제11항”을 “법 제8조제12항”으로 한다.

### 1.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

제6조제2항제1호중 “법 제8조제6항”을 “법 제8조제7항”으로, “법 제8조제11항”을 “법 제8조제12항”으로 한다.

##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2조(구성)</b>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1. 3인의 위원은 법관·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~ ③(생략)</p>	<p><b>제2조(구성)</b> ①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<u>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하는 자</u>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조(기능)</b>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</p> <p>1. <u>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</u></p> <p>2. <u>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</u></p> <p>3. ~ 4. 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	<p><b>제3조(기능)</b> ①----- -----</p> <p>1. <u>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</u></p> <p>2. <u>법 제8조제12항</u>----- -----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(생략)</p> <p>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1.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③ ~ ④(생략)</p>	<p>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법 제8조제7항 ----- -----법 제8조제12항 -----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④(현행과 같음)</p>